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82
----------	-------

제출연월일 : 2002. 2. .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여 지방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감면조례 설치 목적 내용을 보완함(안 제1조)

나.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나병을 한센병으로 변경함(안 제5조)

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하여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라.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중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함(안 제13조)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두천시 시세의”를 “동두천시 시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로 한다.

제5조중 제목“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두천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u>지역사회의</u>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동두천시 시세의</u> ----- ----- <u>법령기능을</u> <u>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u> <u>역사회의</u> -----.</p>
<p>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u>나환자</u>가 <u>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u>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u>축사용 부동산에</u>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제5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u>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u> <u>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농원안</u>----- ----- ----- -----.</p>
<p>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생략)</p> <p>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u>종합토지세의 50%</u>를 경감한다.</p>	<p>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p> <p>②----- ----- ----- <u>종합토지세 과세표</u> <u>준액</u>-----.</p>
<p>제13조(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p> <p>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 을 받은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u>가공업자가</u> 과세기준</p>	<p>제13조(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p> <p>①----- ----- ----- <u>농수산물가공</u> <u>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u> <u>업자</u>----- ----- -----.</p>

현행	개정안
<p>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감한다.</p> <p>② ~ ③<생략></p>	<p>----- ----- ----- ----- ----- ----- ----- -----.</p> <p>② ~ ③<현행과 같음></p>